

## 화순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 1. 심사경위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97. 4. 10 화순군수
- 나. 회 부 일 자 : '97. 4. 10
- 다. 상 정 일 자 : '97. 4. 17 (제54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 2. 제안 설명요지

- 가. 제 안 자 : 재무과장 정 부 응
- 나. 제안사유
  -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중 불합리한 용어의 자구를 정비키 위함.
- 다. 주요내용
  - 제4조중 "운영위원회" 다음에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삽입
  - 제7조 제3항중 단서조항을 삭제
  - 제10조 제2항중 "매년별로 운영위원회"를 "매년 위원회"로 개정
  - 제17조, 제19조, 제21조, 제22조중 "운영위원회"를 "위원회"로 개정

####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민병항)

- 동조례 개정안은 불합리한 용어의 자구를 정비키 위한 개정조례로서, 화순군 조례규칙 심의회 의결을 거치는 등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

#### 4. 질의답변 요지

"생 략"

#### 5. 토론요지

"생 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첨 부 : 화순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 부. 끝.

## 화순군읍면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97 - 36
----------	---------

제출 년월일 : 1997. 4. 10 .

제 출 자 : 화 순 군 수

### 1. 제안사유

조례의 불합리한 조문 및 용어정비

### 2. 주요골자

가. 운영위원회 구성 (조례 제4조)

"운영위원회" 다음에 "(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삽입

나. 위원회 회의 (조례 제7조)

단서조항 "단, 표결결과 가부동수인 때에는 읍.면장이 결정한다"를 삭제

다. 사용료등 수가기준 (조례 제10조 제2항)

"매년별로 운영위원회"를 "매년위원회"로 개정

라. "운영위원회"를 "위원회"로 개정 (조례 제17조, 제19조, 제21조, 제22조등)

## 화순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안)

화순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중 "읍면에 운영위원회" 다음에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삽입하고 동조 제2항 중 "운영위원회"를 "위원회"로 한다.

제7조 제3항중 단서를 삭제한다.

제10조 제2항중 "매년별로 운영위원회"를 "매년위원회"로 한다.

제17조 제2항, 제19조 제3항, 제21조 제1항 및 제22조 제1항중 "운영위원회"를 "위원회"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구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 (운영위원회 구성) ① 복지회관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읍면에 <u>운영위원회를 둔다.</u></p> <p>② <u>운영위원회</u>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한다.</p> <p>③. ~ ⑤. (생략)</p>	<p>제4조 (운영위원회 구성) ① - - - - - - - - - <u>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u> - - - - -</p> <p>② <u>위원회</u> - - - - -</p> <p>③. ~ ⑤. (현행과 같음)</p>
<p>제7조 (회의) ①. ~ ②. (생략)</p> <p>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u>단, 표결결과 가부동수인때에는 읍·면장이 결정한다.</u></p>	<p>재7조 (회의)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 - - - -</p> <p>- - - - -</p> <p><u>(단서삭제)</u></p>
<p>④ (생략)</p> <p>제10조 (사용료등 수가기준) ① (생략)</p> <p>② 읍면장은 복지회관의 사용료 등 수가를 매년별로 <u>운영위원회의 의결</u>을 거쳐 군수의 승인을 얻어 확정하고 연도개시 30일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단, 별도의 공고가 없을 경우 전년도의 수가에 따른다.</p>	<p>④ (현행과 같음)</p> <p>제10조 (사용료등 수가기준)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 -</p> <p><u>매년 위원회</u> - - - - -</p> <p>- - - - -</p> <p>- - - - -</p> <p>- - - - -</p>
<p>제17조 (손해배상) ① (생략)</p> <p>② 제1항의 손해배상액은 <u>운영위원회</u>에서 결정한다.</p>	<p>제17조 (손해배상)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 - <u>위원회</u> - - - - -</p> <p>- - - - -</p>

### 신. 구문 대비표

현행	개정 (안)
<p>③ (생략) 제19조 (관리인) ①. ~ ②. (생략)</p> <p>③ 관리인에게는 <u>운영위원회</u>에서 의결된 보수를 지급한다.</p> <p>④ (생략) 제21조 (위탁) ① 읍면장은 제3조에 의하여 위탁관리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u>운영위원회</u>의 의결을 거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p> <p>②. ~ ⑤. (생략) 제22조 (지도감독) ① 읍면장은 복지회관 위탁관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매년 1회이상 업무지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군수 및 <u>운영위원회</u>에 보고하여야 한다.</p>	<p>③ (현행과 같음) 제19조 (관리인)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 - - - - <u>위원회</u> - - - - - - - - - -</p> <p>④ (현행과 같음) 제21조 (위탁) ① - - - - - - - - - - - - <u>위원회</u> - - - - - - - - - -</p> <p>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2조 (지도감독) ① - <u>위원회</u> - - - - - - - - - -</p>